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28

발의연월일: 2020. 6. 22.

발 의 자:용혜인·강은미·김경만

박용진 • 박주민 • 양이원영

윤미향 · 윤재갑 · 장혜영

정성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적시함. 특히 선거권 및 피선 거권 등의 정치적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 권이라 할 수 있음.

지난해 12월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청소년 참정권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선거권의 연령 역시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한편 해외의 경우 피선거권의 최저연령을 독일·스웨덴 18세, 영국 2 1세로 제한하는 등 청년의 정치적 권리를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하는 가운데 한국의 정치환경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25 세로 상정한 현행법을 18세로 하향하여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라 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부합함과 동시에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를 넓히 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중 "25세"를 각각 "18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피선거권) ① (생 략)	제16조(피선거권) ① (현행과 같
	<u>수</u>)
② <u>25세</u>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	② <u>18세</u>
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③
이상(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選擧日전 60日후에 귀국한 者	
는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계속하여 選擧日까지)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u>25세</u>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	18세
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	
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	
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	
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